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자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군·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 설치 근거 신설〉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951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5. 13.
3. 회 부 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군·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관리, 근로계약 체결 절차 대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의·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3(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군·구의 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의 대행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의·조정 4.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¹⁾ 제도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최대 8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²⁾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침(법무부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구 분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대상	①사·군과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25~50세, 본국에서 농업에 종사), ②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사촌 이내의 친척(19세~55세) ③ 유학생 부모(55세 이하)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D-1(문화예술), D-2(유학), D-4(어학연수), F-1(방문동거), F-3(동반) 등 9개 체류자격
고용주	농어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배정심사협의회 승인을 받은 기초지자체(농협))	
고용 기간	최대 8개월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까지
허용 인원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 허용 /공공형 사업자인 경우 최대 100명 이내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추가 허용(최대 14명)	
허용 업종	농업(축산분야 제외), 어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조사하고 신청을 접수한 후 그 결과를 출입국관서에 제출하면, 출입국관서에서 심사자료를 작성함.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배정인원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정된 규모에 따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친척 등을 초청함.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주별로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는 한편, 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음.

즉,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 및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해외 지자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계절근로자의 인솔·교육·배치 및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집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³⁾

3)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950호)」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954호)」이 함께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절차 및 기관별 업무 분담]

단계	지자체	출입국관서	법무부
계절근로 도입 준비 및 고용주 모집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등 ①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②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	유치 신청 사전심사 (지자체·고용주, 배정 신청 인원) ▼ 본부 보고	결과 취합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제출
운영방식 결정	○ 농어가 직접 운영 방식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방식 ④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서		
유치 신청	①~③ 출입국관서 송부 및 비자포털 입력		지자체 별 배정 인원 수 확정
배정심사 협의회			
근로자 선정·유치	외국 지자체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 발급 (재외공관)	
고용주별 배치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 마련 및 배치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고용주(숙소·근로계약 등), 계절근로자 적격 확인		
계절근로자 입국	공항만 인솔·교육(단체 입국) 및 출입국관서 통보	교육 지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기준에 따라,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발급 ○ 고용주·외국인 근로계약 주선 ○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치 현황'	○ 배치 현황 확인 ○ 근무처변경	
이탈 발생	○ 소재 불명신고(고용주→지자체) ○ 출입국관서 통보	실태 조사 → 벌점 부과 → 본부 보고 ※ 필요 시 합동 TF	
근로조건·인권보호 위반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출입국관서 통보	취약 지역 실태 조사 → 벌점 부과 → 본부 보고 (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지역 점검 현황) ※ 필요 시 합동 TF	벌점 취합 및 배정 제한
불성실 근로자 (본인 귀책 계약 해지)	○ 고용변동신고(고용주→지자체) ○ 계약해지 사유 출입국관서 통보	(계절근로자) 출입국 방문 → 체류자격취소 ※ 근로자귀책없음경우, 근무처변경 허가	
성실근무자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고용주, 근로자→지자체) 계절근로자 고용·참여신청서 제출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확인서 발급(지자체 →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 발급 (재외공관)	
(단체) 출국	출입국관서 통보	-	

자료: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침('26.6.29.)

개정안은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참고로 2022년 기준 1만 6,924명에 불과하였던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26년 상반기에만 9만 3,503명으로 증가하였음.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배정인원(명)	16,924	35,604	61,250	86,680	93,5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절근로자 모집 업무를 사인(私人)에게 일부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개업자(브로커)의 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은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⁵⁾ 법체계적으로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4) 국회의원 박지원·임미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2025.1.21.

5)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 업무량⁶⁾을 고려하여 전담조직을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규모로 구성하는 경우 시·군별 연간 인건비 소요액을 약 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139개 시·군에 적용할 경우 연평균 추가 인건비 소요액은 약 283억 8,300만원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군 수(A)	139	139	139	139	139	139
시·군별 전담조직 인건비(B)	204.2	204.2	204.2	204.2	204.2	1,021
추가재정소요 (C=A*B)	28,383.8	28,383.8	28,383.8	28,383.8	28,383.8	141,9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문 의 처

02)6788-541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25.11.) 참고